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2020년 11월부터 서울시 ○○구 ○○동 ○○번지 일대, ○○재정 비축지구역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의 옹벽철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하여 독서실 이용자가 급감하여 영업상 피해가 있어 공사회사인 ○○에 소음·진동·분진 등의 방지 대책과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 또한 암반과 옹벽 발파 및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금도 피신청인(공사업체)은 신청인의 애절한 호소에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이해해 주고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답변과 함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파, 파석, 굴착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옹벽철거작업 및 근린공원공사는 ○○아파트 소유자(상가포함) 약 77%의 동의로 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아파트 및 전문상가동과 맞닿은 옹벽 해체 및 공원형성으로 상가의 접근성 개선 및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며, 주변의 상가 및 아파트 주민의 공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가 입주자 및 대표님들에게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리면서 이 공사는 공익사업이니 만큼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은 자제하기로 동의하여 진행 중인 공사입니다.

- 피신청인은 당 현장 옹벽철거 공사 시공 중 소음, 진동에 대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의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첨부한 사진대지와 같이 현장 내 살수차 운영 및 살수 요원을 상시 배치 살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으로 신청인의 보상요구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됩니다.
- 신청인의 현 피해상황은 소음, 진동 때문에 등록이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옹벽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요청이 합당한 지에 대해 재정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사업장 주변으로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공사 및 피신청인의 토목공사로 인해 정온한 환경은 아니다.

### 나. 신청인 영업 건물 현황

- 위     치 : ○○구 ○○길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595  $m^2$
- 규     모 : 지상4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 2003.3.31.

○ 신청인별 사업장 현황

○○독서실	○○카페
대표자 : ○○ 개업일 : 2019.2.7. 업 종 : 서비스업 임대기간 : 2019.5.21.~ 임대조건 : 규 모 : 6실, 67석	대표자 : ○○ 개업일 : 2018.12.18. 업 종 : 서비스업 임대기간 : 자가 규 모 : 23석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아파트 옹벽철거공사 및 근린공원 조성공사
- 위    치 : ○○구 ○○길
- 규    모 : 11,267  $m^2$
- 공사기간 : 2020.11.16.~2022.1.
- 발 주 처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 ○○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공사장을 상대로 인근 주민의 소음 등의 피해민원이 관할구청(주거정비과, 환경과)에 16차례 제기되어 2차례 공사장 생활소음 측정에서 규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소음측정 결과[측정지점]

- ① 2021. 1.29.(금) : 73dB(A){○○ 118동 ○○호}
- ② 2021. 2.25.(목) : 76dB(A){○○ 118동 ○○호}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영업손실 피해 평가

-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옹벽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의 환경적 위해요소가 수인한도를 넘어 신청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할 정도의 피해인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 환경적 위해요소가 발생되기 이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 자료를 파악한 후, 환경적 위해요소 평가기간(2020.11월 ~2021.05월) 동안의 실제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매출의 변화(감소) 유무를 판단하였다.
- 매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동일 상권 내 환경적 위해요소를 받지 않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매출추이를 비교분석하고, 2020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COVID-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매출 변화, 매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업체의 진·출입, 경기변동, 서비스의 품질, 입지조건, 광고·홍보, 고정 수요층의 변화여부, 영업 시간 등 사회·주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통해 소음과 매출감소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다.
- 신청인은 영업시간 09시~02시, 휴무일은 설날이며, 학생과 일반인 각각 50%의 비율정도 된다는 의견이나, 요일별/시간별 이용객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보고서상의 시기별 매출특성을 적용하였다.
- 관련자료 상 동일 경쟁관계의 진·출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옹벽 및 접근로의 철거,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으로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진 점은 인정되나, 독서실의 특성상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타 업종에 비해 민감한 점을 감안하여 다른 환경적 요인은 배제하였다.

[표1] 영업 손실액 산정

상호/대표자	○○독서실/ ○○
피해기간	2020.11~2020.07(9개월)
평균매출액	3,752,537원(월)
매출감소율	34%
소음 기여율	21%
영업손실액	=월평균매출액*매출감소율*소음기여율x 피해기간 =3,752,537원*34%*17.0%*9개월 =1,952,069원

[표2] 영업 손실액 산정

상호/대표자	○○카페/ ○○
피해기간	2020.11~2020.07(9개월)
평균매출액	737,334원(월)
매출감소율	19%
소음 기여율	15.6%
영업손실액	=월평균매출액*매출감소율*소음기여율x 피해기간 =737,334원*19%*15.6%*9개월 =196,691원

## 나. 소음 피해 평가(건설장비)

-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기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동일 작업일에 발생한 장비소음과 발파소음은 각각의 초과소음도를 산출하고 높은 쪽을 해당 작업일의 초과소음도로 계산하였다.

#### 다. 소음 피해 평가(발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보고서”를 기준하여 발파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소음원과 신청인 사업장 사이의 장애물(방음벽 및 건물자체)의 삽입 손실을 산출하였으며, 예측소음도와 삽입손실을 고려하여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발파소음은 발파횟수 보정 시 발파횟수는 계측소음도가 60 dB(A) 이상인 계측치를 계수하여야 하나, 전체 발파횟수를 보정해도 발파횟수의 오차가 삽입손실보다 훨씬 작으므로 무리가 없어 계산의 편의상 전체 발파횟수를 사용하였다.

#### 라. 진동 피해 평가(장비)

- 투입장비의 진동도가 이격거리 5m에서 최대 52.0dB(V)이고, 신청인 사업장과 장비의 작업위치가 최근접 이격거리가 10m 이므로 신청인 사업장에서의 예측 진동도는 47.1 dB(V)이다.

#### 마. 진동 피해 평가(발파)

- 계측 진동속도의 범위가 0.0128 ~ 0.1490 cm/sec 이며 [최대 진동속도는 2021년 5월21일 발생] 이 최대 진동속도를 진동레벨로 환산하면 61.1 dB(V)이다.
- 60 dB(V)[진동속도 환산치  $V = 0.1228$  cm/sec] 이상인 계측치를 계수하면 총 81회 중 13회이므로 발파 횟수보정 예측진동도는 72.2 dB(V)이다.

## 바. 먼지 피해 평가

-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 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토사먼지 발생이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사. 피해기간 산출

- 작업일 별로 장비소음의 초과소음도와 발파소음의 초과소음도 중 높은 쪽으로 초과소음도 피해일수를 집계하였다.

## 4. 판 단

-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하락이 피신청인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일부 영업손실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사업장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2dB(A)로 평가되어 주거 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최대 7dB(A)을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에 의한 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은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사용 장비의 진동 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 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발파작업 시 진동도 예측결과 최대 72.0dB(V)로 평가되어 주거 지역 수인한도인 75dB(V) 이내로 발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 ○○에게 배상한다.
- 공사장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 하여도, 신청인의 영업 전에 인접하여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최근에도 단지 주변 정지작업이 진행된 점 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및 정온한 주거개념이 아닌 사업 활동 공간임을 고려하여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배상액의 70%를 적용한다.

### 다. 배상금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637,000원, 영업손실액 1,504,120원 재정신청 수수료 6,400원을 추가하여 합계 2,147,520원이다.